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형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임순묵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9월 27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9월 28일

3. 제안이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도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으로서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함.

5. 검토내용

가. 1999년 4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해당 법률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부여하였고,
나.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사무를 위임받은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이미 1999년에 시장·군수에게 부여하였고,

나.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해당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